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4. 6. 24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출 일자 : 1994년 6월 17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6월 17일

3. 제 안 이 유 :

○ 대통령령 제14,263호('94. 5. 16)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○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함.

5. 검 토 의 견

○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상위법인 대통령령 제14,263호('94. 5. 16)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